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08월 22일

진도읍장 인

세대주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**	김** 1957-11-11	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3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9-08-16